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 결

사 건 2026가합4155 정산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범, 박미령, 강은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정
변 론 종 결 2026. 7. 3.
판 결 선 고 2026.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870,492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8. 3.부터, 나머지 390,870,492원에 대하여는 2026. 3. 5.부터 각 2026. 8.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915,285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529,915,285원에 대하여는 2026. 2.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수, 배우 등의 연예활동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전 소속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 체결 및 갱신 등

1) 원고는 만 17세이던 2003. 4. 20. 피고와 최초로 전속계약(이하 '1차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경부터 연예활동을 시작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6. 4. 20. 및 2018. 5. 1. 피고와의 사이에 수익분배율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각각 '2차 전속계약', '3차 전속계약'이라 한다), 뒤이어 2021.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하고, 1 내지 3차 전속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 한다) 및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전속계약서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단서 생략)

제3조[연예활동의 범위 및 매체]

1. 원고의 연예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① 배우·모델·성우·TV탤런트 등 연기자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 광고출연, 행사진행 등의 활동
 - ②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 ③ 기타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거나, 문예·미술 등의 창작활동 등으로서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합의한 활동

제7조[수익의 분배 등]

1. 수익분배방식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피고와 원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 때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원고와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광고수수료비용 및 기타 피고가 원고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계약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피고가 수령하여 매월 말일자로 정산하고 다음 달의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단, 매월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정산주기 및 지급일을 정할 수 있다.
5.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정산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콘텐츠의 귀속 등]

1. 계약기간 중에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의 매체 등을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피고에게 부여된다.
2.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정산한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피



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조항과 관련하여 피고는 대한민국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원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을 인정하고,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활용을 통해 피고의 콘텐츠 유통 등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 구조 다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2조[계약기간 및 갱신]

1.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1. 8. 1.부터 2024. 8. 31.까지(3년 1개월)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1. 피고 또는 원고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부속합의]

1.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속합의서(수익 및 분배에 관한 약정)

제2조[수익분배]

3.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있어서 TV, 영화 및 영상매체의 고정 출연으로 지급받은 실 출연료의 70%, 광고 모델료 및 기타 상업적인 행사 출연료에서 피고가 제수수료 공제 후 지급받은 실 금액의 70%, 기타 해외 지역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실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의 음반·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요구 및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통보 등

1) 피고는 2004. 1차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원고에게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관리 및 정산내역서 작성 등 정산을 위한 기초 작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22. 11. 15.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 기간 동안 원고에



게 단 한 번도 음원료 수익의 발생 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준 적이 없어, 원고는 최근에서야 피고가 원고의 음반 발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음원료 수익을 얻어 왔음에도 이를 정산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음원료 수익 내역의 제공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의 정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요구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음원료 수익 전부에 대한 내역 제공 및 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2022.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12. 2.)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2호증¹⁾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²⁾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

-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광고 모델료 수익 관련 과다 지급한 정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4.부터 2022. 11.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의 확정판결문이다[이 법원 2025. 4. 4. 선고 2023가합49200(본소), 2023가합49218(반소) 판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 2) 원고는 2026. 8. 10.자 참고서면을 통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된 2022. 12.부터 당초의 기한인 2024. 8.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의 매출에 대한 정산금의 경우, 위 계약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이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만 기재되어 진술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2항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로 인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부속합의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실 수익금에 70%의 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정상적으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70%,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5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정산금만을 구하고자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산의무의 이행으로서, 2022. 12.부터 2025. 1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위와 같은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산금 원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일부 변제한 부분을 뺀 나머지 829,915,285원[=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시점인 2022. 12.부터 당초의 전속계약 기한인 2024. 8.까지 피고가 실 수령한 음원 및 음반 매출액(별지 표 순번 1 내지 21의 '실수령 매출'란 기재 각 금액) $\times$ 70% + 2024. 9.부터 2025. 11.까지 피고가 실 수령한 음원 및 음반 매출액(별지 표 순번 22 내지 36의 '실수령 매출'란 기재 각 금액) $\times$ 50% - 일부 변제한 정산금 32,950,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의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2022. 12. 2. 적법하게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 시점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피고가 기존에 개발·제작된 원고의 음반 내지 음원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정산의무의 존부(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의 해석) 및 정산 시 적용할 배분비율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피고의 정산의무 존부

1) 관련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계약종료 이후 제1항에 따라 매출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항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 정산비율을 합의를 통해 확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도의 정산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은 계약 종료 이후 기존에 피고가 개발·제작한 원고 관련 콘텐츠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성취 시(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 단서 또한 피고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원고의 요청이 있을 시 정산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의 본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다만 계약이 종료된 사정을 감안하여 상호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비율(금액)이나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게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은 '콘텐츠의 귀속 등'을 정한 제10조의 하위 조항 중 하나로서, '계약기간 중에 원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개발·제작한 콘텐츠는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 또한 발생과 동시에 피고에게 부여된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1항 바로 다음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체계 및 각 조항의 내용에다가, 피고에게 원고의 음반 및 음



원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음반 및 음원의 유통, 판매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연 내용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3장 제2절 참조)을 가지는 실연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하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제10조 제2항은 피고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의 실연이 포함된 기존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원고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채권적 이용권³⁾)를 부여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원고에게 정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 이상 위 계약에 포함된 수익분배 규정도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계약 제10조 제2항 본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별도의 정산합의가 성립하였을 경우에만 피고가 위 매출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은 '계약종료 이후' 즉, 계약이 실효된 이후의 법률관계(정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조항임이 문언상 분명한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실효된다고 하여 위 조항까지 실효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전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제10조 제2항 본문을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고로서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으로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되는바,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

3)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3항은 원고가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실연권)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되어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다. 정산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음반 및 음원 수익 분배비율

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은,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매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그 배분비율을 합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구체적 협의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조항에 근거한 정산금 지급청구를 받고도 줄곧 '별도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정산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정산을 거절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전속계약 제10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의 의사,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당사자들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적용될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게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원인 및 원고와 피고가 정산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를 초래한 후 위 조항에 따른 정산의무 이행을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얻지 못하고 있는 정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인바,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은 피고의 정산의무 범위를 산정하는 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나) 그에 따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존속하였더라면 위 계약의 존속기한인 2024. 8. 31.까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그 음반 및 음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의 70%를 배분받을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존속기한 전에 해지된 원인은 피고가 약 20년 간 원고에게 음원 및 음반 관련 수익을 정산하여 주지 않고 원고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데 있는바,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점(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로서,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존속하였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정산금 상당액⁴⁾을 얻지 못한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부속합의에서 정한 70%의 배분비율은, 단순히 개별 콘텐츠 자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해진 것이라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된 상태로 연예

4) 엄밀하게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존속하였더라면 얻었을 정산금 상당액과 이 사건 전속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후 얻게 된 정산금 상당액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원고의 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피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나아가 피고의 매출 전반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⁵⁾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원고가 전속활동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대중문화예술 업계의 관행상으로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계약에서 정한 정산비율보다는 적은 비율로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년 가까이 피고와 전속계약 관계를 맺고 연예활동을 성실히 함으로써 피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의 비율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초 존속기한인 2024. 8. 31.까지는 60%, 그 이후부터는 40%로 정한다.

2)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의 계산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한 2022. 12.부터 2025.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기존에 개발·제작된 원고의 음반 및 음원으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매출액이 별지 표 '실수령 매출'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별지 표의 '미수령 매출'란 기재 각 금액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중 피고가 수령하지 못한 'D' 매출 금액이다(2026. 5. 11.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실수령 매출액에 앞서 인정한 '음반 및 음원 수익 분배비율(별지 표 '정산비율'란에 기재된 비율)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해주어야 할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은 같은 표 '정산금(원)'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피고로부터 정산금 합계 32,950,00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며, 위 지급금을 이 사건 제10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5) 가령, 1집 음반 및 음원 매출에 관한 원고의 수입분배비율은 1차 내지 3차 전속계약을 거치며 점차 증대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해당 음반/음원 자체에 대한 원·피고 기여도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대한 정산금 원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피고의 위 지급금을 앞서 계산한 정산금 원금의 합계액 723,820,496원(별지 표 '정산금(원)'의 '합계액'란 기재 참조)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할 정산금은 690,870,492원(= 723,820,496원 - 32,950,004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종료 후 2022. 12.부터 2025. 11.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음반·음원 수익금에 대한 미지급 정산금 690,870,492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8. 3.부터,⁶⁾ 나머지 390,870,492원⁷⁾에 대하여는 그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6. 2.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6. 3. 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지급의무는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는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이 사건 2026. 2.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를 확장한 부분에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02

재판장 판사 김민철

 판사 박혜영

 판사 정세영